
- 도봉산~옥정 광역철도 임시정거장 개통 관련 기관사 투입 용역 -

과 업 내 용 서

2026. 8.

**철도항만물류국
철도건설과**

과업내용서

1. 용역명 : 도봉산~옥정 광역철도 임시정거장 개통 관련 기관사 투입 용역

2. 용역목적 : 도봉산~옥정 광역철도 임시정거장 개통에 따라, 자체 시설물 검증을 위한 전동차의 시운전 시험 및 장암역 휴업기간 동안 도봉차량기지의 안정적인 회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, 서울교통공사로부터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내 구간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기관사를 배치하여 회차 지원 및 시운전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한다.

3. 과업대상

1) 용역인원 투입 계획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	투입인원	일수	투입일정 ³⁾	비고
기관사	사전준비(교육 포함)	12인	7일 ²⁾	2026.09.21.~9.28.	주간
	회차	10인	29일	2026.10.02.~10.30.	주간, 야간
	현차시험(시운전)	2인	11일	2026.10.6.~10.16.	야간
관리자	현장관리	4인	29일	2026.10.02.~10.30	주간, 야간
상주인력 ¹⁾	잔류승객 확인	4인	29일	2026.10.02.~10.30.	주간, 야간

1) 장암역 휴업기간 중 회차열차 내 잔류승객 확인을 위한 상주인력 배치 필요

※ 영업운행 기준 운행횟수: 평일 78회, 휴일 63회(운행계획 변경 시 이에 준하여 조정)

2) 용역 기관사 경력에 따라 교육일수 변경될 수 있음.

3) 투입일정은 임시정거장 개통을 위한 검증시험(시설물 검증시험 등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영업시운전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투입 예정

2) 용역 운전구간: 7호선 도봉산~장암역 구간, 도봉차량기지 내 등

- 3) 근무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주간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주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며, 주간 휴게시간은 열차운행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4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50일

5. 설계변경조건

- 1) 본 용역은 조사 당시 계획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부분 및 현장여건에 따른 회차 지원, 시운전계획 및 영업운행 계획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기로 한다.
- 2)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(시운전 지연 등)으로 회차 지원, 시운전 기간 및 잔류승객 확인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한다.

6. 과업의 수행방법

- 1) 용역착수계 제출
 - (1)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(2) 착수계에는 용역책임자 선임계(위임장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첨부)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선임계, 참여인력 현황[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(이력사항 확인서 포함), 기술자격증사본 등], 예정공정표,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(조직 및 기구표 포함), 보안각서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기타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 - (2-1) 철도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회차 및 시운전에 투입될 모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간 실무수습·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(기관사 투입 이전)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- (1) 자료조사

- (2) 과업추진계획서(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작성)
- (3)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(인력투입계획은 주요 분야별 과업의 세부내용별로 작성)
- (4) 참여기관사의 인적사항,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
- (5) 예정공정표
- (6)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, 일정 등 기타사항

3) 안전관리계획서 제출

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(기관사 투입 이전)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안전관리 개요
- (2)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
- (3) 안전관리 시행방법
- (4)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
- (5) 기타사항

7. 소요비용

회차 지원, 시운전 및 잔류승객 확인에 따른 근로자에게 필요한 도구, 장비, 소모자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8. 계약자의 의무

- 1)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각종 회의 사항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3) 투입된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가 불가하며,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자의
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4)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이 기술적,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부적정 인원
에 대한 교체 및 부족인원에 대하여 총원하여야 한다.
- 6) 과업에 투입된 인원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근거로 기성 및 준공금을 신청
하되, 정산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7)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는 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며, 계약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
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8) 계약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회차 지원, 시운전 및 잔류승객 확인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9. 적용 법규 및 관련 제규정

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법규 및 관련 제기준에 따르되,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
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.

- 1) 기준 및 관련 규정
 - (가) 철도안전법, 시행규칙, 시행령
 - (나)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
 - (다) 철도차량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 시행지침
 - (라) 기타 시험열차운행과 관련한 법규 및 관련기준 등

10. 기 타

- 1)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,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,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는 국내외 공공기관에서
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,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3)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하며, 자료의 오류가 발생 될 경우 발주부서와

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4)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5) 과업수행에 대한 상세내용은 착수계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에 명기되지 않은 과업내용에 대한 상세 기술은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한다.
- 6)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 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7) 본 과업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.
- 8) 용역수행 중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상충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9) 계약자는 발주자의 회차 및 시운전 계획에 따라 기관사를 투입하고, 영업운행 계획에 따른 잔류승객 확인을 위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회차, 시운전 계획 및 영업운행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 회차 지원, 시운전 시험 및 잔류승객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10) 계약상대자는 근무 세부 실적(전동차 운전시간, 교육시간, 대기시간, 휴게시간, 상주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일지 등)을 작성하여 용역대가 청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수행분에 대해 용역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.
- 11) 기관사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(전동차, 시설물 등)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복구한다.
- 12)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를 준수하고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회 차 지 원 세 부 내 용

2.1. 회차 지원의 목적

도봉산~옥정 임시정거장 개통에 따른 휴업기간 중 도봉차량기지 회차 운영을 위하여, 서울교통공사로부터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내 구간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기관사를 배치하여 회차 지원 업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한다.

2.2. 회차 지원의 종류

회 차 지 원 내 용

- 회차에 투입되는 기관사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간 운영을 위한 소정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근무 시간(주간, 야간, 휴일 포함)은 열차운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장암역 휴업기간 중 도봉차량기지 입환 회차 전환 지원
 - 본선(도봉산역~장암역) ※ 업무 수행 여건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운전구간이 변경될 수 있음.
 - 도봉차량기지 내

※ 위 세부내용과 회차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및 서울교통공사의 일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.

시 운 전 세 부 내 용

3.1. 시운전의 목적

도봉산~옥정 임시정거장 개통에 따라, 자체 시설물 검증을 위한 전동차의 시운전 시험으로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내 구간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기관사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운전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이다.

3.2. 시운전의 종류

시 운 전 내 용

- 시운전에 투입되는 기관사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7호선 및 도봉차량기지 구간 운영을 위한 소정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근무 시간(주간, 야간, 휴일 포함)은 시운전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도봉차량기지 신호시스템 개량에 대한 검증 시운전
 - 본선(도봉산역~장암역)
 - 도봉차량기지 내

※ 위 세부내용과 시운전을 위한 제반 업무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및 서울교통공사의 일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.